

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7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4. 2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4조의2의 제목 중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”과 안 제4조의2제1항 중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을”에서 정한 ‘지침’은 행정규칙의 한 유형으로 “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·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·추상적 규율”을 의미하는바,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, ‘지침’을 ‘안내서’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의2의 제목 중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”을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”로 함.
- 안 제4조의2제1항 중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(이하 “안내서”라 한다)를”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침이”를 “안내서가”로 함.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의2의 제목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”을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”로 변경한다.

안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(이하 “안내서”라 한다)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침이”를 “안내서가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의2(지역주택조합 가입 지  <u>침</u>) ① 시장은 「주택법」 제2  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  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  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 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  역주택조합 가입 <u>지침</u>(이하  “<u>지침</u>”이라 한다)을 제작하여  <u>배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 및 방법</p> <p>2.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  항</p> <p>3.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  례</p> <p>4.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 필요한 정보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  된 <u>지침</u>이 「주택법 시행규  칙」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 따른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  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의2(지역주택조합 가입 안  내서) ① -----  -----  -----  ----- 지  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(이하  “<u>안내서</u>”라 한다)를 -----  -----.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-----  -- <u>안내서가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
#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) ① 시장은 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가 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(이하 “안내서”라 한다)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
1.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
2.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
3.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
4.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4조의2(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) ① 시장은 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(이하 “안내서”라 한다)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</u></li> <li><u>2.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</u></li> <li><u>3.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</u></li> </ol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